2025 년도 방과후 아동 클럽(학동보육) 이용료 감면제도 안내

고베시는 소득에 따른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감면 구분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표의 필요 서류를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로 우송하시거나 스마트폰, PC 등으로 e-KOBE를 찾아보고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접수는 2025 년 1월 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KOBE 전자신청

1.감면 구분 ·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할 서류

감면 구분	감면액	필요 서류
생활보호 수급 가구	전액	생활보호 적용 증명서(등록 아동의 서류) *3 개월 이내에 구청이 발행한 것
(전년도분의) 시민세 비과세 가구(*1)이며, 또한 편부모 가정	전액	없음 *고베시의 시스템으로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을 확인합니다. 단,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 받지 않고 있는 분은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 (사본) 또는 기타 한부모 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의 수탁 가구	전액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 증명
(전년분의) 소득세 비과세 가구 (*1)(*2) 2010 년도 세제 개정 이전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경우에 비과세로서 취급되게 되는 가구를 포함한다(뒷면 참조).	반액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 ●2024 년분 원천징수표 (사본) =근무처에서 교부 받은 서류 ●2024 년분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 1 표 및 제 2 표 (사본)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세무서 접수인이 찍힌 것) 단, 2025 년 6 월 이후에 본 신청을 할 경우 상기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베시의 시스템으로 "주민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1 세액을 계산할 경우 아래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 공제, 외국 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특별 감세)
- *2 "2010 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하면 비과세 취급이 되는 가구이신 분은, 부양 친족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십시오.

2.유의사항

- (1)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2)년도 도중부터 해당 가구가 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3)감면 결정 후에 감면 이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속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4)이용하는 방과후 아동 클럽을 변경하고,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 (5)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문의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 (문의처)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 TEL:078-381-5533

2010 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비과세 취급에 대하여

2010 년도 세제 개정에 의하여 연소(年少) 부양공제 및 16~18 세까지 특정 부양공제의 가산 부분이 폐지된 바 있으나,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이 세제 개정이 이용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부양공제의 폐지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2024년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재계산을 함으로써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소득 금액'(원천징수표(源泉徵收票)에서는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 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보다 적은(또는 동일 금액) 경우에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는 동시에 신청서 뒷면의 부양친족 신고서에 18 세 이하(2024 년 12 월 31 일 시점) 부양친족을 기입하고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부양친족 신고서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계산을 못하게 되어,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결정을 못하게 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참고】 2010 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폐지된 부양공제

연소(年少) 부양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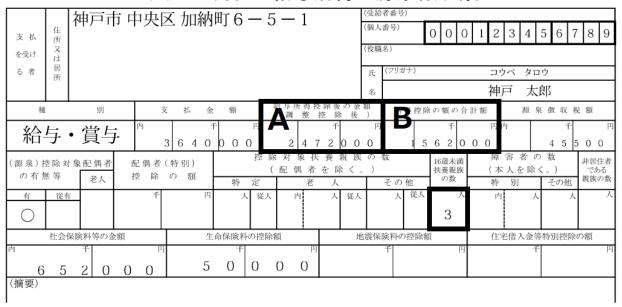
380,000 엔×16 세 미만(0~15 세) 부양친족 수

특정 부양공제 가산 부분

250,000 엔×16~18 세 부양친족 수

〈비과세 취급 예시〉 16세 미만 부양친족이 3명인 경우

令和 年分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상기 "원천징수표(源泉徵收票)"의 예〉

과세되는 소득금액

(A)2,472,000 엔 - (B)1,562,000 엔 = 910,000 엔 ····· ①

2011 년부터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

(예:16 세 미만 부양친족이 3명, 16~18 세 부양친족이 0명인 경우)

380,000 엔 × **3 명** + 250,000 엔 × 0 명 = 1,140,000 엔 ······ ②

과세되는 소득 금액 "①910,000 엔"이 2011 년부터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 "②1,140,000 엔" 이하인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비과세로 취급합니다.

①910,000 엔 ≦ ②1,140,000 엔 ···①이 ②보다 적으므로 비과세로 취급되어, 반액이 감면됩니다.